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정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020

발의연월일: 2021. 5. 11.

발 의 자 : 양정숙・이규민・오영훈

안호영 · 서영교 · 류호정

유준병·김수흥·김홍걸

이용빈 · 황운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에서 발표한 '2020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'에 따르면 사이 버 폭력이 2019년에 비해 3.4%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, 현행 법에서는 사이버 따돌림 역시 학교폭력의 하나로서 정의하고 있는 행 위임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학교 수업의 상당 부분이 대면교육이 아닌 비대면으로 유지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 할 때 사이버 따돌림의 문제는 더욱 관심 있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.

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은 현행법에서 학교폭력으로서 열거하며 정의하고 있는, 상해·폭행·감금·협박·약취 및 유인 등과는 이질적 인 성격을 갖고 있기에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에도 정의 조항 외에 차 별화된 입법적 조치는 발견되고 있지 않음.

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, 교육감이 학교폭력 등에 관한

조사·상담·치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전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때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관한 차별화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9항후단 신설).

법률 제 호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한다"를 "하되, 따돌림 및 사이 버 따돌림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"로 한다.
제11조제9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해당 전문기관에 따돌림 및 사이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대책위원회의 구성) ①・②	제8조(대책위원회의 구성) ①・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	③
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	
람으로 <u>한다</u> . 다만, 제1호의 경	<u>하되, 따돌림 및 사이버</u>
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	따돌림에 관한 전문가가 포함되
	<u> 어야 한다</u>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	제11조(교육감의 임무) ① ~ ⑧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⑨ 교육감은 학교폭력 등에 관	9
한 조사, 상담, 치유프로그램	
운영 등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	
치·운영할 수 있다. <u><후단 신</u>	<u>이 경우 해</u>
<u>설></u>	당 전문기관에 따돌림 및 사이
	버 따돌림에 대응하기 위한 전
	담부서를 설치·운영할 수 <u>있</u>
	<u>다.</u>
⑩ ~ ⑫ (생 략)	① ~ ② (현행과 같음)